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2408 |
|----------|------|

2021년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1. 5. 25.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1. 5. 31.

4. 상정일자 :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1. 6. 24.)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21. 7. 2.)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황보연)

-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가 51억 4천 4백만 원에서 94억 3천 3백만 원으로 42억 8천 9백만 원 증가하였고, '예탁금 원금 회수'가 2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15억 원 증가함
- 지출계획 '비용자성사업비'를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296천 5천 5백만 원에서 5.9% 수준인 17억 4천 8백만 원 증가한 314억 3백만 원으로,
- '재무활동'을 54억 7천 8백만 원에서 73.8% 수준인 40억 4천 1백만 원 증가한 95억 1천 9백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2408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2.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예치금 42억 8,900만원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적립할 예정으로,
- 나.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의 복리증진 등으로 집행하고자 '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다.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 분 | 당 | 초 | 변 | 경 | 증 | 감 |
|---|---|---|--------|---|--------|---|-------|
| 합 | 계 | | 35,133 | | 40,922 | | 5,789 |
| 전 | 입 | 금 | 27,821 | | 27,821 | | - |
| 예 | 치 | 금 | 회수 | | 5,144 | | 9,433 |
| 예 | 탁 | 금 | 회수 | | 2,000 | | 3,500 |
| 이 | 자 | 수 | 입 | | 168 | | 168 |

<지출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 분 | 당 | 초 | 변 | 경 | 증 | 감 |
|---|---|---|--------|---|--------|---|-------|
| 합 | 계 | | 35,133 | | 40,922 | | 5,789 |
| 비 | 용 | 자 | 성 | 사 | 업 | 비 | 1,748 |
| 예 | 치 | 금 | | | 5,478 | | 9,519 |
| 예 | 탁 | 금 | | | - | | - |

○ 수입 변경 : 57억 8,900만원 증가

- 예치금 회수 증가 : 42억 8,900만원[(당초) 51억 4,400만원 → (변경) 94억 3,300만원]
 - ※ 양천 기금 계획대비 차액(주민지원사업비 7억 1,600만원 등)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발생 : 8억 4,500만원
 - ※ 노원 기금 계획대비 차액(아파트 관리비 17억 4,800만원 등)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발생 : 18억 4,700만원
 - ※ 강남 기금 계획대비 차액(주민복지증진사업비 15억 8,800만원 등)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발생 : 15억 9,600만원
 - ※ 마포 기금 계획대비 차액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발생 : 100만원
- 예탁금원금 회수 증가 : 15억원
 - ※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금리(1.39%, '21. 3. 기준)가 공공예금 금리(1.71%, '21. 3. 기준)보다 낮음에 따라 회수

○ 지출 변경 : 57억 8,900만원 증가

- 비용자성사업비 증가 : 1,748백만원
 - ※ 2020년도 노원주민지원기금 중 아파트관리비 등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2021년도 기금 지출계획에 반영
- 예치금 증가 : 4,041백만원
 - ※ 2021년 수입 변경 및 비용자성사업비 지출 변경으로 예치금 증가

3. 검토내용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 57억 8,700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42억 8,900만원)와 **예탁금원금회수**(15억원)로 증액하고, 지출계획중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17억 4,800만원)과 **여유자금 예치**(40억 4,100만원)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아울러 관련 기준은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①**효율적인 폐기물처리**가 당초보다 5.9%, 17억 4,800만원 증가하여 의회의 의결사안에 해당되지 않으나, ②**일반예산(재무활동)**은 73.8%, 40억 4,100만원 증가하게 되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3-1〉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 당 초 (A) | 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B) | 증 감 (C=B-A) | 증 감 륜 (D=C/A) |
|---|--------------|---------------------------|------------------|--------------------|
| 계 | 35,132 | 40,921 | 5,789 | 16.5 |
| 효 율 적 인 폐 기 물 처 리 | 29,654 | 31,402 | 1,748 | 5.9 |
| 난 방 비 지 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 6,463 | 6,463 | - | - |
| 양천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지원 | 2,356 | 2,356 | - | - |
|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지원 | 1,158 | 1,158 | - | - |
|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 2,948 | 2,948 | - | - |
| 주 민 지 원 협 의 체 운 영 비 지 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 782 | 782 | - | - |
|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 187 | 187 | - | - |
|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 292 | 292 | - | - |
| 노원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 178 | 178 | - | - |
|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 123 | 123 | - | - |
|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비 지 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 12,264 | 14,012 | 1,748 | 14.3 |
|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7,300 | 9,048 | 1,748 | 23.9 |
|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아파트 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4,963 | 4,963 | - | - |
| 주 민 복 지 증 진 사 업 비 (관 리 비/임 대 비) 지 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 10,145 | 10,145 | - | - |
|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 관 리 비 및 임 대 료 지 원 | 10,000 | 10,000 | - | - |
| 노원주민 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 145 | 145 | - | - |
| 일 반 예 산 (재 무 활 동) | 5,478 | 9,519 | 4,041 | 73.8 |
| 보 전 지 출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 5,478 | 9,519 | 4,041 | 73.8 |
| 여 유 자 금 예 치 | 5,478 | 9,519 | 4,041 | 73.8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5830('21. 6. 4)

-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중 ①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 및 월주택임대료·의료비·주민편익시설 이용료·후생복지비 등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해당되며, ②여유자금 예치의 경우에도 기금의 조성액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련 법령과 기준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 당초 동 기금의 정책사업은 ①**효율적인 폐기물처리**, ②**일반예산(재무활동)**으로 기재하여 제출되어야 하나,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비용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으로 임의로 구분되어 제출된 바,
 - 부정확한 정책사업을 기재함으로써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부대의결 : 「생략」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2021. 7.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
|----------|------|
| 의안 번호 | 2408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예치금 4,289백만원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적립할 예정으로,

나.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의 복리증진 등으로 집행하고자 '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 수 입 | | | | 지 출 | | | |
|-------------|---------------|---------------|--------------|-------------|---------------|---------------|--------------|
| 항목 | 당초(A) | 변경(B) | 증감(B-A) | 항목 | 당초(A) | 변경(B) | 증감(B-A) |
| 합계 | 35,133 | 40,922 | 5,789 | 계 | 35,133 | 40,922 | 5,789 |
| 전입금 | 27,821 | 27,821 | | 비용자성 사업비 | 29,655 | 31,403 | 1,748 |
| 예치금 회수 | 5,144 | 9,433 | 4,289 | 예치금 | 5,478 | 9,519 | 4,041 |
| 예탁금 원금회수 | 2,000 | 3,500 | 1,500 | 예탁금 | - | - | |
| 이자수입 | 168 | 168 | | | | | |

○ 수입 변경 : 5,789백만원 증가

- 예치금 회수 4,289백만원 : (당초) 5,144백만원 → (변경) 9,433백만원
 - ※ 양천 기금 계획대비 차액(주민지원사업비 716백만원 등)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발생 : 845백만원
 - ※ 노원 기금 계획대비 차액(아파트 관리비 1,748백만원 등)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발생 : 1,847백만원
 - ※ 강남 기금 계획대비 차액(주민복지증진사업비 1,588백만원 등)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발생 : 1,596백만원
 - ※ 마포 기금 계획대비 차액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발생 : 1백만원
- 예탁금원금 회수 증가 : 1,500백만원
 - ※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금리(1.39%, '21. 3. 기준)가 공공예금 금리(1.71%, '21. 3. 기준)보다 낮음에 따라 회수

○ 지출 변경 : 5,789백만원 증가

- 비용자성사업비 증가 : 1,748백만원
 - ※ 2020년도 노원주민지원기금 중 아파트관리비 등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2021년도 기금 지출계획에 반영
- 예치금 증가 : 4,041백만원
 - ※ 2021년 수입 변경 및 비용자성사업비 지출 변경으로 예치금 증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 작성자 :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 박포근 (☎2133-3699)